



목 차

■ 건설관련 소식 1

- 건설시장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는 발전전략 구상
- 건설공사 청렴도 향상 및 성실시공 다짐
- 2014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12개 사업에 304억 원 투입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구축사업 가시화
- 통영국제음악당 준공 기념식 개최
-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승인업무 처리방안 수립
- 2014년 상수시설 대폭 확충
- '민·관 합동 건설공사 품질관리교육' 실시
- 함안~가야 구간 도로 전 구간 계통
- 창원시, 친환경건축 선도 '탄소제로 하우스' 착공
- 통영시장, 연말 준공예정 사업장 현장 확인
- 거제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마무리

■ 지식정보 12

- 순환골재 사용, 예산절감환경보호 효과 톡톡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공청회 개최
- 이제 준주거, 준공업지역에서도 주택과 관광호텔 복합건축 가능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건축행정 데이터 맞춤형 개방"
- 건설 인허가시스템, 민원 2단계로 축소
- 예산과 업무계획으로 미리 엿본 새해 경남도정
-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구축 MOU체결
- 창원~부산간 도로 통행료 결정

■ 입법예고 및 법령해석 20

■ 신기술 정보 25

■ 건설기술심의 현황 26

■ 계약심사 현황 27

■ 기술인 나눔 정보 27

건설관련 소식

건설시장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는 발전전략 구상

▶ 11월 25일 도청에서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개최

경남도는 11월 25일 오후 2시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위원장 : 윤한홍 행정부지사)를 개최하여 건설관련 주요시책 추진현황 보고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공동방안을 모색하였다.

위원회는 건설업 등록현황과 건설 주요시책 추진상황보고 및 2013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선정 심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연구 용역 수행과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건에 대하여 안건 심의·의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경남도는 이번 위원회 심사로 결정된 2013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최종 선정자에 대하여 다음 달 5일 풀만호텔(창원시)에서 개최되는 '2013 경상남도 건설산업발전 연찬회' 행사에서 도지사가 시상을 하며,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업체 육성과 건설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건설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통보하여 최대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인 윤한홍 행정부지사)은 “정부의 SOC 사업 투자 축소와 구조조정 등 건설업계를 위축시키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시장 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건설수요를 창출하는 방안과 지역 업체간 상호발전 전략수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내년에도 지역건설 상생발전 협력을 위하여 건설 관련 단체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신규과제 발굴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개최 전경>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건설지원담당
(055)211-4614

건설공사 청렴도 향상 및 성실시공 다짐

▶ 11월 26일 도청에서 지방도사업 건설관계자 회의 개최

경남도는 도내 지방도 건설현장의 청렴도 향상 및 공사현장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공사현장 책임감리원, 현장소장,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관계자 회의를 11월 26일 경남도청에서 개최했다.

회의는 '감동서비스 청렴 경남' 구현을 위한 청렴도 향상 및 성실시공 다짐, 해빙기 대비 재해예방대책 강화를 위해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각 현장별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임금체불 등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건설업체간 하도급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현장 임금 및 건설장비 임대료, 건설 자재대 체불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채건 경남도 도로과장은 “청렴도 향상 및 재정 조기집행에 노력한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성실시공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경남도는 2013년 현재 지방도 사업 총 40개 지구 210.0km에 67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 사업은 가능한 억제하면서 준공과 부분 준공 위주로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 효율성을 강화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지방도 사업 건설관계자 회의 전경>

■ 자료 : 도 도로과 도로계획담당
(055)211-4664



2014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12개 사업에 304억 원 투입

▶ 문화예술네트워크 도시재생 사업 등, **舊마산 원도심권**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건의

경남도는 2014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12건, 304억 원을 투입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내에는 창원시, 김해시가 이에 해당된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문화예술네트워크 도시재생사업 등 중심 시가지 재생사업에 5건, 창원들녘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에 5건, 창원시 노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거지 재생에 2건이다.

특히, 올해 12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월영광장조성 등 신규 3건의 중심시가지 재생사업과 어방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거지재생사업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2014년을 ‘도시재생 원년의 해’로 지정하여 쇠퇴하거나 쇠퇴가 진행중인 舊마산, 진주, 밀양, 통영 등 원도심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여 활력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지난 5월 홍준표 도지사도 창동에술촌을 방문하여 새 정부 국정과제인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에 대한 도의 관심과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舊마산 원도 심권이 2014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에서 선전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시 ‘마산재생 프로젝트’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자료 : 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055)211-4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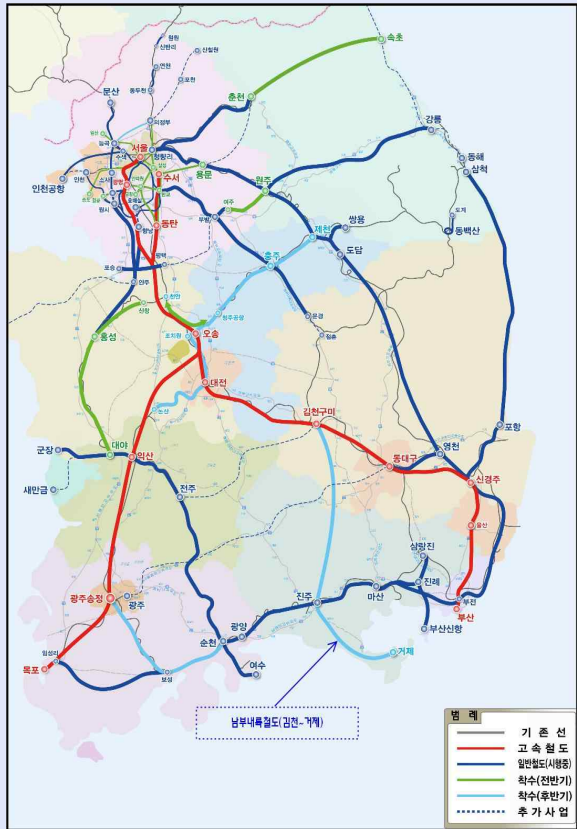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구축사업 가시화

경상남도는 11월19일 개최된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에서 홍준표 도지사의 공약사업 가운데 하나인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결과 총 70개의 사업 중 35개 사업이 예타사업으로 확정됐으며 이중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간 구축사업이 포함돼 KDI에서 12월 수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될 것이며, 최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확정될 전망이다.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구축사업은 국가사업으로 6조 7907억 원을 투입하여 김천~거제간 총연장 186.3km를 연결하는데, 완공되면 서울~진주간 소요시간이 2시간 10분, 서울~창원간 2시간 38분, 서울~거제간 2시간 30분이면 가능해 기존 KTX의 서울~진주간 3시간 30분에 비해 1시간 20분이 단축되며, 서울~창원간 3시간 5분에 비해 27분이 단축 된다.



<내륙철도 노선도>

경남도는 “이 사업은 경남도의 서·남부권 균형발전과 남해안 관광활성화, 물류수송 및 남부내륙의 산업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경남도는 “이 사업이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탈락했었고, 올해 들어 정부의 대형 SOC사업 대폭 축소 방침에 따라 예타대상이 될 것을 낙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홍준표도지사가 공약사업으로 전략적으로 관리하면서 BC를 높이고 논리를 가다듬어 정부고위관계자와 전문가를 적극 설득해왔고, 관련지역 국회의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유도해온 점이 주효했다고 평가된다.

경남도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예비타당성조사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준비하고, 12월 발표될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정용역」에 현재 2016년 이후사업으로 되어있는 것을 전반기(2011~2015) 착공사업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는 예산의 재정건전성과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된 회의로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와 해당사업 담당국장이 참석해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을 선정하는 회의다.

■ 자료 : 도 교통정책과 공항철도담당 (055)211-4492



통영국제음악당 준공 기념식 개최

▶ 세계정상급 음악인과 음악애호가들의 전당, 11월 8일(금) 오후 2시 2천여명 참석

아시아의 대표 음악축제로 발돋움한 통영국제음악제와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를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건립한 통영국제음악당 준공 기념식이 11월 8일(금) 오후 2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준공 기념식은 이흥구 통영국제음악제 이사장,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장, 각계각층의 음악애호가 등 2,000여 명의 참석한 가운데 비아트리오, 정민아의 프린지 공연이 식전행사로 열리며,

식후행사로 메인홀에서는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와 리즈콩쿠르 우승에 빛나는 피아니스트 소피아굴리악과 통영국제음악제의 상주연주단체인 TIMF앙상블의 협연으로 기념음악회가 열리며, 같은 시간 블랙박스에서는 국악계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소리꾼 김용우가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소리를 선보인다.

통영국제음악당은 통영시 도남동 앞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자리해 마치 갈매기 두 마리가 바다로 비상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2006년부터 추진되어 8년에 걸친 여정 끝에 이번에 준공 되었으며, 국비 243억 원, 도비 166억 원, 시비 111억 원 등 5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통영국제음악당 전경>

부지 33,058㎡에 연면적 14,618㎡의 지상5층 건물로 1,300석의 음악전용홀인 메인홀과 300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인 블랙박스를 비롯한 리허설룸, 음악당 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시설 공간인 카페테리아, VIP라운지, 옥외데크, 옥상전망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통영국제음악당은 도내에서는 유일하고 전국에서 네 번째 규모의 클래식 전용 공

연장으로 서울 예술의전당, 고양 아람누리, 성남 아트센터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최고의 건축물로 내년께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통영국제음악제의 최대 숙원이었던 공간 문제 해결은 물론, 음악제의 국제적 위상제고 등 다양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도 문화예술과 문화정책담당
(055)211-4713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승인업무 처리방안 수립

- ▶ ‘취득세 과세자료를 실건축비로 인정’이 최근 법원의 일괄된 판결
- ▶ 법원판결 근거로 명확한 분양전환 업무 처리 절차 마련

경남도는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승인업무 처리방안을 수립하여 도내 일선 시·군에 시달, 분양전환 과정에서의 부당한 가격산정과 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처리방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① 시장·군수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하면서 상한가격 표준건축비 100%로 제출하더라도 이에 따를 필요 없이 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의 취득세 신고 시 제출한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실 건축비 확인 후 이를 근거로 분양전환가격 산정 및 승인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② 시장·군수는 임대사업자가 표준건축비로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한 경우 먼저, 실 건축비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임대사업

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신고 시 제출한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실 건축비로 인정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하면 될 것이며, 이와 같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과세자료를 실 건축비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임대사업자에게 다시 한번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친 후 분양전환 승인 처리하여 향후 예상되는 소송 등 민원발생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미 분양전환 완료된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재 산정한 후 임대사업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권고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경남도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자료를 실 건축비로 인정한 2013년 8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과 8월 21일 경남도의 임대아파트 분양가 부당이득구조개선 발표 후 이어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잇따라 경남도의 방침을 뒷받침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2013년 10월 17일 청주지방법원(제11민사부)은 청주시 상당구 소재 부영아파트 분양전환 289세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취득세 과세자료를 실 건축비로 인정하여 세대 당 작게는 668만 4천 원부터 많게는 1336만 9천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토록 판결하였으며, 2013년 11월 5일 창원지방법원에서도 창원시 진해구 남명플럼빌리지 270여 세대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 주관 감정 재평가와 창원시로부터 제출받은 취득세 과세자료 등에 근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남명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수분양자에게 세대당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이는 경남도의 방침과 같이 취득세 과세자료에 근거한 실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을 법원에서도 인정한 결과이다.

특히, 남명플럼빌리지의 경우 법원의 종국판결에 이르기 전에 사업자가 수분양자들과 부당이득 반환금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 조정을 수용하였는데 이는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좋은 선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타 사업자에게도 확산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경상남도는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창원지방법원에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김해시 장유 갑오마을 4단지 외 4개단지 1,200여 세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된다.

경남도는 8월 대책발표 이후 타 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로부터 관련 업무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이해 당사자로부터의 직접민원도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건축과 주택관리담당
(055)211-4432



2014년 상수시설 대폭 확충

- ▶ 지방상수도 등 10개 분야 153개소 1,164억 원 투입
- ▶ 114개 소규모 급수지역을 광역 또는 지방 상수도로 전환
- ▶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 노후 수도관 260km 개량

경남도는 내년도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확대를 위하여 상수도시설 확충 등 10개 분야에 1,16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2015년까지 상수도 보급률을 92%이상 끌어 올리기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나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마을상수도 등에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 3,509개소 중 36%인 1,257개소에 대하여 2017년까지 광역 또는 지방상수도로 전환하여 만성적인 물 부족 현상을 일부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11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내년도에 새로이 추진되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지구는 진주시 정촌·금곡·명석, 거제시 사등, 산청군 생비량, 함양군 서상, 거창군 웅양, 합천군 용주, 초계·적중, 청덕, 창녕군 성산, 창녕읍 등 10개 지구이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남해군 창선지구, 본섬 일부 지구 등이며, 통영시 추도, 한산도 일부, 연화도, 수우도 등 일부 지역은 사전절차 이행 또는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함안군 칠서, 칠원, 칠북면 3개 지구에 공급되고 있는 2만 2천 톤 생산 규모의 함안 강변여과수의 정수시설 보강을 위하여 총 소요사업비 84억 원 중 내년에 조기 착공을 위하여 10억 원의 도비를 지원하는 한편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현재의 누수율 20.5%를 2018년까지 전국 평균수준인 10.8%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5개년 계획을 수립, 매년 4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내년에 260km 정도를 개량한다.

또한,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등 일부 지역에 물 관리 전문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하여 선 투자하는 방법이나 거창군 등 14개 시·군의 BTL 방식의 개량사업에 대하여 매년 그 효과를 분석해 나가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누수율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 누수율 저감 방안으로 통영시, 사천시, 고성군 등에 36억 원을 지원하여 상수도 관망 블록화 사업을 추진해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누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순수 지방비로는 계획 기간 내 목표를 달성하기에 어려움에 따라 타 시·도와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국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 자료 : 도 수질관리과 상수도담당
(055)211-4243



하반기 ‘민·관 합동 건설공사 품질관리교육’ 실시

▶ 11월 11일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현장 실무 위주의 맞춤형 교육으로 부실공사 사전예방 기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건설공사 품질관리체계의 정착 및 품질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5월에 이어 하반기 건설공사 품질관리교육을 도내 건설공사 담당공무원 및 공사현장 관계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11월 11일 도로관리사업소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품질관리 실무교육 전경>

이번에 실시하는 하반기 교육은 올해 10월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차선 및 표지판의 휘도측정시험에 대한 시험방법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등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이해를 돕고 신속히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직접 교육대상자가 품질시험에 참여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한 참여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차선휘도측정 실습교육 전경>

건설공사는 각 공종이 단계별로 추진되므로 공종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잘못 시공된 부분의 재시공이 어려운 특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각 단계별로 공사시방서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고품질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첫 걸음이다.

건설공사 품질관리교육은 도 본청 및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5월부터는 건설공사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현장관계자로 교육대상을 확대 실시하여 품질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제고하고 전문지식 함양에 크게 기여하는 등 건설공사 관계자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아오고 있다.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여건에 맞추어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건설공사 품질교육과 홍보를 통해 부실한 건설자재와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하여 고품질의 건설시공을 통한 안전한 도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 자료 : 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안전과 (055)254-4233



함안~가야 구간 도로 전 구간 개통

▶ 교통여건 개선으로 산업 물동량 수송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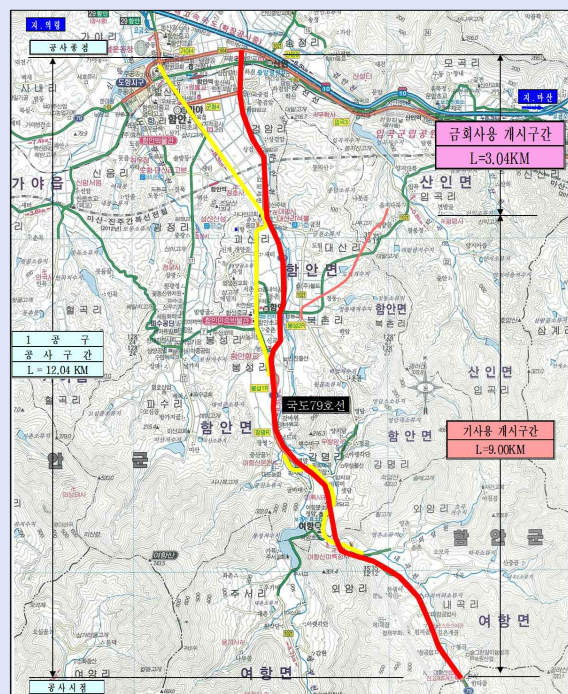
경남도는 함안군 여항면 내곡리에서 가야읍 말산리 구간 4차로 확·포장 12.04km 전 구간을 완료하여 12월 2일 (월) 오전 10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함안~가야간 도로 4차로 확·포장 공사’는 경남도 발주로 지난 2000년 9월 20일 착공하여 1공구인 함안군 여항면 내곡리~가야읍 말산리 구간 12.04Km(4차로)와 2공구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임곡리~창포리 구간 3.84km(2차로) 총 연장 15.88km를 총사업비 1,432억원을 투입하여 12월 2일 개통한다.

이번 전 구간 개통으로 함안군 여항면 내곡리에서 가야읍 말산리까지의 굴곡과 경사가 심한 2차로가 직선화 및 경사를 완화한 4차로로 확·포장하여 개선되어 통행거리가 1Km 줄어들고 소요시간은 20분 단축된다.

또한, 함안군 가야읍, 여항면과 창원시 삼진(진동·진북·진전), 내서읍과의 교통여건 개선으로 남해안 관광객 유치 및 산업 물동량 수송 원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건 경남도 도로과장은 “이번 개통으로 지역 간 연계 발전과 주민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4차로 확장 및 직선으로의 개량으로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운전자들이 과속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잘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함안~가야간(1공구)위치도>



<함안~가야간(2광구)위치도>

■ 자료 : 도 도로과 도로계획담당
(055)211-4665



창원시, 친환경건축 선도 '탄소제로하우스' 착공

▶ 의창구 용지공원 내에 약 105㎡ 규모에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건축자재 반영

창원시가 기후환경에 기반을 둔 최적화된 건축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탄소제로하우스'를 짓기로 했다.

창원시와 창원친환경도시건축조직위원회는 19일 의창구 용호동 소재 용지호수 내에서 조영파 창원시 제2부시장, 전점석 탄소제로하우스추진단장, 이성섭 창원시의원, 창원시건축사회원, 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를 절감하는 친환경 건축을 홍보하고 교육하기 위한 '탄소제로하우스' 착공식을 거행했다.

'탄소제로하우스'는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액티브설계와 건물자체의 단열 및 기밀성능 강화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패시브 설계를 적용하는 친환경 건축물이다.

이번에 건립되는 '탄소제로하우스'는 약 2억9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약105㎡(1층)의 건축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탄소제로하우스 조감도>

지난 2012년 9월 탄소제로하우스추진단이 구성되어 2013년 9월에는 건축허가와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이날 착공하게 됐다. 공사기간은 약 3개월 정도이며, 내년 2월이면 시민에게 선보이게 된다.

'탄소제로하우스'에는 태양광발전과 빗물재생, 단열성능강화를 위한 3중 창호 외부 블라인드 등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건축자재가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어 전기에너지를 직접 생산해 냉난방을 하고, 외부 기온변화가 건물 안에 미치는 것을 차단해 에너지 절감에 최적화된 건축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건물에서 향후 시민 교육 및 홍보는 창원시건축사회에서 맡아 창원시 소속 건축사회원들의 지식 및 재능 기부로 추진된다.

창원시 제2부시장은 "탄소제로하우스가 준공되면 친환경건물의 '샘플하우스'로서 공개되어 친환경건물을 원하는 시민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환경수도 창원의 위상을 한 단계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자료 : 창원시 건축경관과
(055)225-4352



통영시장, 연말 준공예정 사업장 현장 확인

▶ 완벽시공은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는 지름길이다.

통영시는 지난해와 상반기에 이어 2013년 연말 준공예정 사업장 26개소에 대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11월 4일부터 18일까지 공사 준공 전에 직접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다.

김동진 시장은 시민들로부터 공사 관련 의견과 불편사항 등을 청취하고 감독공무원과 공사관계자 등에게 '부실시공으로 인해 사소하고 작은 하자가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주지시키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를 지시하면서 '완벽시공은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는 지름길이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저소득가구 에너지효율화 개선사업장을 방문, 사업자와 저소득가구를 격려하면서 '이웃과 봉사단체, 행정의 저소득가구의 아픔을 같이하며 추운 겨울에 희망을 가지도록 서로 도우며 격려하는 지혜로움'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공사 현장 확인 시 만나는 어업인에게 우리 통영바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다 같이 '미국 FDA 지정 해역관리에 어업인과 주민들의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부탁하였으며,

현장 확인 시 직접 통영 생태 숲 조성공사의 자투리에 9~10월경이면 황금빛 꽃을 맺는 향기로운 금목서를 식재하면서 수목관리를 철저히 하여 생태 숲의 면모를 갖추도록 지시하였다.

통영시는 금번 지시 및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완벽시공 등 피드백을 통한 사업 추진 효율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자료 : 통영시 지역발전추진단 (055)650-3311



거제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마무리

▶ 최첨단 폐기물시설 종합타운 탄생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조감도>

거제시에서 환경기초시설의 선진화 일환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준공을 눈앞에 두고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총 공사비 78억 원을 투입하여 2012년12월6일 착공한 음식물류 공공처리시설이 11월 현재 건축 및 기계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부분적으로 시운전 단계에 있다. 빠르면 12월 1일부터 전량 처리가 가능하고 올 연말까지 종합 시운전을 거친 후 내년 1월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게 된다.

특히 준공예정인 이 시설의 처리방식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탈수 건조처리 후 찌꺼기와 탈수 건조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인근 소각시설로 이송하여 소각 처리하는 공법으로 설치된 시설이다. 거제시와 유사한 규모의 사료화, 퇴비화 방식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 처리시설에 비해 연간 30억 원의 운영비가 절감될 뿐 아니라 본 시설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외부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비용보다 연간 13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813억 원이 투입된 일 200톤 처리규모의 최첨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을 2011년말 준공하여 친환경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등 환경기초시설의 선진화 모델이 되고 있다.

2013년 7월 초 생활폐기물매립시설 확장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25년 연장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환경기초시설 기반을 구축과 함께 음식물류폐기물과 음폐수를 종합 처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공처리시설이 완비되어 최첨단 시스템의 환경기초시설을 모두 갖추게 됐다.

아울러 자원순환시설내에 총 사업비 28억 원을 들여 소각장 폐열을 이용한 식용작물 재배온실 설치 사업이 지난 10월 착공하여 2014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사업비 17억 원이 투입된 자원순환시설 부지확장공사가 내년 3월 준공되면 하청면 한내8길 일원이 최첨단 폐기물처리시설 종합타운으로 새롭게 탄생되어 시 관내에서 배출되는 모든 생활

폐기물을 한곳에서 폐기물 종류별로 친환경 시스템에 의해 종합적으로 처리된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런던협약에 따라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이 대폭 상승되어 위탁계약 및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 오던 중 본 시설의 준공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문제 해소는 물론 생활계 폐기물처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전망이다.

■ 자료 : 거제시 문화공보과
(055)639-3384

지식 정보

순환골재 사용, 예산절감·환경보호 효과 특특

- ▶ 우수활용사례집 발간...폐기물 절반인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재생아스콘 및 콘크리트 제품) 사용이 늘면서 공공·민간 건설현장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충남도 당진시는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공사에서 3만2천 톤의 재생아스콘을 사용하여 4억5천만원의 예산을 절감(전량 일반아스콘 사용 대비 12%)하였다. 그 외에도 삼성물산, 신안군, 강릉시, 제주시 등에서도 순환골재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이 늘고 있다. (삼성물산)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조성공사 등 5개 공사에 도로보조기층용으로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17억 5천만원 절감 (신안군) 압해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및 하수관거정비공사에 순환골재 5만㎡를 사용하여 2억 9천만원 절감 (강릉시) 최근 6년간 구정군도 3호선 확포장공사 등 97건의 공사에 재생아스콘 6만 톤을 사용하여 17억 5천만원 절감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등 7개 공사에서 총 2만6천 톤의 재생아스콘을 활용하여 8억 7천만원 절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013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활용사례 공모전'에서 선정된 위의 사례를 공공·민간 영역에 전파하기 위해 오는 11월 22일 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

또한, 선정 사례를 모아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활용사례집」을 발간하고, 국가기관·지자체, 건설사 등에 배포하여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이 증가하면 예산절감은 물론 총 폐기물 발생량의 50%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이 증가하고, 천연골재 채취량이 감소하여 환경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환골재 100%사용 건축물 시범사업
“되돌림 화장실” >

■ 자료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044)201-3730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공청회 개최

- ▶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11. 26.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11.27일(수) 한국철도공사 대강당(대전역 인근)에서 향후 10년간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 국가의 중점 시책 등을 포함하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지난 6.4일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의 시행(12.5일)을 앞두고, 도시재생특별법 제4조에 따라 향후 10년간(2014~2023)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 기본전략이다.

이 날 공청회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 연구를 맡은 국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연구원이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패널 토론과 방청객의 질의응답 등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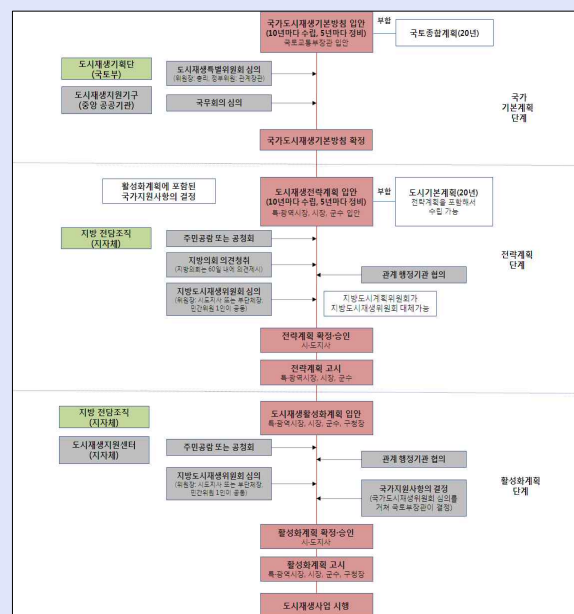
이 날 발표를 맡은 국토연구원의 유재윤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전국 3,470여개 읍·면·동 중 2,239개(65%)가 인구 감소, 산업의 침체, 주거환경 노후화 등 쇠퇴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하고, 국내 도시 쇠퇴의 주요한 원인으로 도시외곽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과 도시경제기반의 상실 등을 들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정책을 기성시가지 위주로 전환하고,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기존의 물리적 정비방식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도시재생을 위한 재정·금융지원, 규제 특례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재생계획(전략계획, 활성화계획)의 작성 방향 및 원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기준(안), 도시쇠퇴기준 및 진단기준 등도 함께 제시하였다.

정부는 이 날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을 12월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앞선 11.26일(화)에는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지방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구성·운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요건,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 방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12월말까지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14년도부터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이 추진되는 등 도시재생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연말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내년 4월까지 도시재생선도지역(10개 내외)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4년도 정부예산안에 도시재생선도지역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 지원을 위한 243억원이 반영되었고, 정부예산안 발표 당시 '생활밀착형 SOC'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도시재생 계획 및 사업체계도>

■ 자료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044)201-3730



이제 준주거, 준공업지역에서도 주택과 관광호텔 복합건축 가능

▶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13.6.4일 공포, 12.5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13.7.11) 후속조치의 일환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11.2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시행령】

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 규정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근거가 주택법에 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구분(입차)이 되는 공간은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등을 갖추고, 그 주거전용 면적은 최소주거면적(14㎡) 이상으로 되도록 하고, 세대 간에는 통합가능한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

-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적용을 위해 세대수를 산정하는 경우, 실제 거주 가구와 관계없이 1세대로 간주하되, 세대구분형 주택의 호수 및 입차되는 공간의 전용면적 합계가 전체 주택의 호수, 전용면적 합계의 1/3을 넘지 않도록 제한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대한 사업계획승인 지침('11.5)'으로 운용 중인 사항을 상향 입법

② 사업정상화 계획에 포함할 사항 규정

○ 사업수행능력을 상실한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업정상화 계획에 공사일정, 준공일정 등의 사업이행 계획, 사업비 확보 현황 및 방법 등의 사업비 조달계획, 소송 등 분쟁 사항의 처리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

③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선정 및 집행주체 개선

○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의사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고 있으나, 선정 및 집행 주체는 주택관리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사업자 선정 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정

④ 하자보수 보증금,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규정

○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판정한 하자 및 조정서의 정보에 따른 하자의 보수비용,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의 보수비용,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하자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따른 하자의 보수비용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 하자보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천만원,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⑤ 주택관리업자 만족도 평가에 대한 사항 규정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하고, 그 평가 결과는 입주자등이 50세대 이상이 참여하고, 동시에 전체의 1/5 이상 참여한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① 공동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 허용 확대

○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7.11)의 후속조치(복합건축물 활성화)로,

-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상업지역에서만 관광호텔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던 것을,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도 관광호텔과 복합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

- 또한,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하는 경우 모든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던 것을, 위락시설(주류판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을 제외한 부대시설(회의장, 체육시설, 식품접객시설 등)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

②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규정

○ 법률에서 위임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을 5년(3년 단위로 연장 가능)으로 하고, 수수료는 인정업무와 시험에 사용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주택법」 시행일에 맞춰 '13.12.5일에 시행(일부 조항 제외*)되며,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건축행정 데이터 맞춤형 개방”

▶ 민간이 필요로 하는 건축행정정보 ‘본인 입맛대로 검색 및 가공’ 가능해져

앞으로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용하여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현황조회가 가능해져 누구나 손쉽게 건축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3.0 시대를 맞이하여 민간의 신사업 발굴지원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 정보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1월에는 단순 표와 그래프 형태의 인허가 통계정보를 공개하였고, 5월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인허가 정보를 지도기반으로 제공한 바 있다.

이번 공개는 기존 단순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에 대한 검색조건(허가/착공/사용승인 기간, 면적, 용도 등)을 부여한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물 정보의 접근 및 활용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특히, 건축물 대장의 경우 연간 1,800만건 이상 발급되는 건축물 현황 정보로 국민들이 직접 시군구 및 용도별 건축물 현황을 온라인으로 스스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물 현황은 정책수립과 건설시장 분석 등을 위해 국가 및 공공기관에만 제공하였지만 국민과 민간기업으로 제공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건축물 정보를 활용하여 포털업계, 부동산 업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모델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전면 개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개 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적극 발굴하여 공유와 협력의 정부 3.0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68



건설 인허가시스템, 민원 2단계로 축소

▶ CALS·포털시스템 개선...건설기술·통계 등 콘텐츠 확충

건설사업 인허가 민원처리 절차가 대폭 축소되고 국토교통 동향 및 건설 기술·통계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체·건설기술자 등의 민원 편의 제고와 다양한 건설정보 제공 등을 위해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의 "건설인허가시스템"과 "포털시스템"을 전면 개선하여 1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 웹 주소 : <http://www.calspia.go.kr>

우선, "건설인허가시스템"은 인허가 신청단계가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개선되며 인허가 통계 및 민원인별 도로·하천 점용신청·허가증 발급 시스템 등이 개발되어 운영된다.

다음으로 건설업체·건설기술자 등이 「건설CALS」의 업무처리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접속하는 "포털시스템"은 화면의 메뉴와 사용도구가 사용자 위주로 재설계되고 국토교통동향, 건설기술정보 및 건설사업통계 등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어 운영된다.

이번 시스템 개선은 '03년부터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이 노후 되어 처리 속도가 늦고 사용기능도 불편하여 국토교통부와 한 국건설기술연구원이 금년 1월부터 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며 '14년도에는 「사업관리시스템」·「시설물관리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건설업체, 건설기술자 및 정부의 건설업무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모바일 이용환경 등도 구축하여 「건설CALS」가 건설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선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선된 내용에 대해 보다 상세한 안내를 원하는 이용자를 위해 유튜브에 「건설CALS」 개선 안내 동영상도 게재하여 시스템 이용자를 위한 꼼꼼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8



예산과 업무계획으로 미리 엿본 새해 경남도정

▶ 2014년도는 '당당한 경남시대'로 본격 도약

경남도가 2014년 준비에 분주하다. 홍준표 도지사가 시정연설에서 밝힌 경남 미래 50년 구체화, 맞춤형 서민복지, 지역균형발전 등의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가다듬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 6조 6,143억 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다.

예산과 업무계획으로 미리 본 내년도 경남도정은 당당한 경남시대를 향해 본격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경제분야의 제일 화두는 '경남 미래 50년 성장동력 확보'이다.

이를 위해서 항공,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산업 국가산단 가시화에 집중하고 한방·양방 향노화 산업육성, 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과 로봇비즈니스벨트 구축을 추진한다.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대상지로 선정된 창원산단은 첨단복합산단으로의 변모를 시작하고 부경과학기술원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부산과 연구개발특구 공동지정을 추진하여 연구개발투자를 강화한다.

마산재생프로젝트와 진주 부흥프로젝트로 구도심의 활력을 제고시키고, 응동의 글로벌테마파크 유치에 비롯한 남해안과 낙동강의 테마형 관광자원을 발굴, 내륙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둘째, 사회복지로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실현이다.

이를 위해서 경남도는 사회복지분야에 사상최대인 2조 3,575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들 예산은 기초연금제도 등 정부 복지정책기조에 적극 대응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기본생활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에 사용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보육아동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어린이 스마트 안전지킴이 서비스가 구축되고, 다문화가족과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상담 캠프와 경남투어도 지원된다. 다만 올해 특정감사에서 드러난 복지누수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감사담당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업 예산지원내역도 투명하게 공시한다. 아울러 최선의 복지인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은 올해 맺은 도내 대학생 채용확대 협약을 확대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한다.

셋째, 지역균형발전으로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주도할 진주부흥프로젝트는 초전신도심 개발, 서부청사 건립을 진행하고, 특히 혁신도시 이전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개소해서 혁신도시로 이전을 지원한다.

현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동서통합지대 조성에 적극 대응하면서 기능성 쌀 재배, 해삼 씨뿌림 사업 등으로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넷째, 문화관광으로 '멋과 여유, 즐거움이 가득한 힐링 경남' 조성이다.

도민들에게 폭 넓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문예회관, 도서관 건립 등 문화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우수문화예술 공연을 많이 유치하며, 경남 미래 50년의 관광자원 개발도 본격화 된다.

다섯째, 환경분야로 친환경 녹색경남을 실현이다.

이를 위해 낙동강 등의 주요 지류의 오염원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맑은 수질을 확보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유지와 연근해 어장 환경 개선에도 투자를 확대해 청정 환경 경남을 대외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

여섯째, 행정분야로 재정건전성 기초 아래 정부 3.0 추진으로 '자치역량강화'이다.

올해 최대의 개혁성과로 평가받는 재정건전성 기초는 내년에도 이어져 채무를 1조 642억 원으로 줄이기 위해 엄격하게 유지되고 산하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공기업 경영평가가 확대(33→ 40개)된다.

최근 몇 년간 계속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과 정부 3.0기조에 부응하는 공개협업의 행정 구현 등 자치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경남도 허성곤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이룬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당당한 경남시대가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정책기획관실 기획조정담당
(055)211-2313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구축 MOU체결

▶ 11월 8일 거제시청에서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거제시와 함께 해양플랜트산업 육성 위해 상호 업무협력

경남도는 11월 8일 오후, 거제시청 중회의실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서상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권민호 거제시장 등 관계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의 효율적 구축을 위한 협약식(MOU)’을 갖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해양수산부는 사업 시행기관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사업 주관기관 및 경남도와 거제시는 사업 지원기관으로 참여하게 되며, 협약은 △ 협약 참여기관의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부지 조성 등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 △ 센터 구축을 위한 협의 및 지원 기구인 운영위원회 운영 △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한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참여하는 것을 담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조선 중심에서 해양플랜트 중심의 복합산업으로 산업 포트폴리오가 전환되는 시기에, 국책연구기관인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의 거제시 유치는 경남의 미래 50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6년까지 거제시 장목면 일원에 설립될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는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약 1,9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1단계로 올해부터 2016년까지 252억 원을 투입, 기본 인프라인 센터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시설로는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연구동 및 평가시험동, 기자재 시험성능동, 해양플랜트 사고 재현 및 훈련시험동, 시설지원동, 교육마케팅 지원동, 다목적 시험장, 기숙사 및 게스트 하우스 등이 약 5만평의 부지에 연건평 17,100평의 규모로 들어서게 되며, 해양플랜트 설계·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지원,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상용화 지원,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교육훈련, 해양플랜트 기술 협력·정보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는 입지 선정과정에서 경남도와 부산시간의 치열한 유치경쟁 끝에, 지난 해 12월 도내 거제시에 유치된 바 있다.

■ 자료 : 도 성장동력과 조선해양담당
(055)211-2733



창원~부산간 도로 통행료 결정

▶ 소형 900원, 중형 1,300원, 대형 1,800원

창원시 도심을 우회하여 마창대교에서 부산시 강서구 생곡동까지 연결되는 창원~부산간 도로 22.4km중 창원시 성산구 완암동에서 김해시 장유동 율해C까지 17km가 지난 10월 13일 임시 개통되어 주민들이 이용 중에 있다.

창원~부산간 도로는 창원터널의 만성적 지정체 해소를 위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완공된 시설을 도에 귀속하고 도에서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BTO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는 관리운영권 기간 동안 도로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여 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회수하게 된다.

현재 임시 통행 중인 도로는 유료화 전환 시 창원영업소 통과차량에 대해 요금을 징수하는 개방식으로 운영된다. 개방식이란 IC 진출입은 자유롭게 가능하며 영업소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대도시 주변같이 교통수요가 많으며 진출입로 간격이 비교적 짧고 단거리 통행차량이 많은 노선에서 주로 운영되며 서울외곽순환도로, 광주제2순환도로 등에서 적용되고 있다.

통행요금은 사업시행자가 그 동안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소형 1,100원, 중형 1,700원, 대형 2,200원을 도에 요청하였으나, 경남도는 “창원~부산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차종별 기준 통행료인 소형 900원, 중형 1,300원,

대형 1,800원을 징수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장애인 차량과 경차 등에 대한 통행료 감면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적용받는다.

통행요금과 관련하여 일부 주민의 통행료 인하, 출·퇴근시간 할인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통행료 차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는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다수와 형평성 결여 등으로 인해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통행료 징수는 사업시행자 11월 5일 관리운영권 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공고, 관리운영권 설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11일부터 징수된다.

창원~부산간 도로는 경남도의 다른 민자도로와 달리 MRG를 지급하지 않는 전국 최초의 민자사업이며, 통영, 고성 방면 이용자는 운행시간 단축, 유류비 절감 등을 고려할 경우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경제적 효과가 크며, 도심지 진입차량 감소로 매연, 소음 등 감소로 정주여건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자료 : 도 재정점검단 민자관리팀당 (055)211-293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입법예고일 : 2013. 11. 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829호)
- 예고기간 : 2013. 11. 4. ~ 12. 16.

□ 개정이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13.7.16 공포)으로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되, 증가 용적률의 일정부분은 임대주택 공급하도록 되어있어 그 구체적인 비율을 규정하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증가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0~30%으로 규정(안 제34조제1항제1호 개정)

나.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과밀억제권역은 20~50%, 그 외 지역은 0~50%으로 완화(안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 의견제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번호 : 044)201-3385, 3390, FAX : 044)201-553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 입법예고일 : 2013. 10. 28.(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787호)
- 예고기간 : 2013. 10. 28. ~ 12. 9.

□ 개정이유

「건축법」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 기준을 설정하고,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고층건축물 공사 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작물 축조 신고시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 내진 등급의 설정 (안 제60조 신설)

- (1) 「건축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내진등급기준에 대하여 규정
- (2)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건축물의 내진등급을 결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내진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나. 고층건축물 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 (안 제61조 신설)

- (1)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에서 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을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
- (2) 고층건축물의 구조안전성 확보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3년 12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전화 : 044-201-3760, 팩스 044-201-5574)

■ 자료 : 법제처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하천법」 제3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정지, 포장 등과 같은 토지의 형태를 변경함이 없이 지목만을 변경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하천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 회 답(2013. 11. 04.)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정지, 포장 등과 같은 토지의 형태를 변경함이 없이 지목만을 변경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하천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 유

「하천법」 제12조제1항에서는 하천관리청은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는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를 제외한 지역 등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는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제1호),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제2호) 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천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하천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는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하나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에서는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에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위치도 및 공사설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에서도 토지의 형질변경을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형질변경은 토지의 굴착·성토·절토와 이와 성질이 유사한 정지, 포장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외형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토지의 외형적·물리적 변경 없이 그 토지의 지목만을 변경하여 토지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토지의 용도가 바뀌는 것은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자료 : 법제처

총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 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등 관련)

□ 질의요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5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함)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고 제6호 본문에 따르면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보되, 같은 호 단서에서는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에 규정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결정 요건인 “해당 시설물 전체”는 “증축 전의 기존 시설물 부분에 증축하는 부분을 더한 해당 시설물의 전체 시설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존 시설물 부분을 제외한 증축하는 부분의 시설면적 합계”만을 의미하는지?

□ 회 답(2013. 10. 25.)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에 규정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결정 요건인 “해당 시설물 전체”는 “증축 전의 기존 시설물 부분에 증축하는 부분을 더한 해당 시설물의 전체 시설면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 유

이 사안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에 규정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결정 요건인 “해당 시설물 전체”는 “증축 전의 기존 시설물 부분에 증축하는 부분을 더한 해당 시설물의 전체 시설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존 시설물 부분을 제외한 증축하는 부분의 시설면적 합계”만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의 문언체계를 보면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같은 표 비고 제5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6호 단서에서는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한 총주차대수 산정방법을 각각 별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용도변경하는 부분의 시설면적”, “증축하는 부분의 시설면적” 및 “해당 시설물 전체의 시설면적”은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는 같은 표에서 규정한 각각의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가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주차대수를 몇 대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호 본문의 규정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주차대수 산정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 산정시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같은 호 단서 규정의 취지는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0.5 이상이 되어 같은 호 본문에 따라 주차대수를 1로 보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시설물의 전체 시설면적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면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전체”는 증축하는 부분의 시설면적 합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언 그대로 해당 시설물의 전체 시설면적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자료 : 법제처

하부천공판을 갖는 알루미늄 패널의 저조와 이 천공판과 고유동성 고강도 모르터에 의해 형성되는 앵커체를 이용한 마감 패널 시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월드와이즈 월
-------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13호
- 기술분야 : 건축/마감/단열

○ 내용요약

신청기술은 건축물 마감재 시공법에 관한 것으로서 i) 하부 천공판을 갖는 습식 외단열 공법용 프리패브 알루미늄 패널을 공장에서 제조하고 ii) 이 패널의 하부 천공판에 고유동성 고강도 모르터를 이용하여 패널을 압착 시공하는 것이다. iii) 이를 통해 구조체와 패널 사이에 고강도 고부착 모르터 앵커체를 형성시켜 마감재의 구조적 안정성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하부 천공판을 갖는 알루미늄 패널을 공장 제작하고 하부천공판과 고유동성 고강도 모르터에 의해 형성되는 앵커체에 의해 지지되는 마감 패널 시공법

LED광원과 광섬유를 이용하여 문자 및 문양표시부와 방향표시부를 발광시키는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제작기술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에이엘테크
-------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18호
- 기술분야 : 교통시설/철도/부대시설

○ 내용요약

제품 내부에 위치한 LED 광원으로부터 표지판 표면에 배치된 광섬유 끝단으로의 광전송을 통해 표지판 정보 일체를 발광 표현하는 기술로 소량의 LED로 충분한 표현력을 제공하며 태양광 발전만으로 구동 가능한 저전력 소비 구조임, 아울러, LED를 제품 내부에 보호하며 약전력으로 구동함으로써 전기적 부하와 외부의 물리적 악영향에 따른 LED의 성능악화, 고장 문제를 개선하였다.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광섬유 케이블과 LED를 이용하여 내부의 LED 소켓에 근접 배치된 광섬유의 한 끝단(번들)에 빛을 간접 조사하여, 표지판 표면의 문양에 따라 배치된 광섬유의 나머지 끝단으로 전송하여 문자, 도형, 화살표 및 테두리에 발광 표시하는 도로 및 교통안전 표지 제작기술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https://www.kaia.re.kr/>) 건설신기술정보마당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현황

2013년 제12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

- 건 명 : 실시설계 적격평가 1건, 실시설계 적정성 1건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 4건
- 심의일자 : 2013. 11. 21.(목)

의안번호	요청사항	사업명	사업개요	발주청	심의결과
2013-12-01	실시설계 적격평가	마산의료원 신축공사	· 위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 3가 일원 · 사업내용 : 연면적 22,748㎡, 지하1층, 지상5층 · 사업비 : 억원(공사비, 보상비등) · 사업기간 : 2012 ~ 2016년	경남 개발공사	설계적격
2013-12-02	실시설계 (적정성)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	· 위치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노도 일원 · 사업내용 : 연면적 75,410㎡ · 사업비 : 150억원(공사비, 보상비등) · 사업기간 : 2013 ~ 2015년	남해군 (문화관광과)	조건부 채택

의안번호	안건명	발주청	심의결과
2013-12-03	산청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생비량지구 지방상수도 인입공사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산청군 (상하수도사업소)	조건부 채택
2013-12-04	창원시 도시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창원시 (신도시조성과)	조건부 채택
2013-12-05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수립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창원시 (새야구장 건립사업단)	조건부 채택
2013-12-06	창원시 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해체 및 개발계획수립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	조건부 채택

2013년 제13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계획

- 건 명 : 실시설계 적정성 1건,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 3건
- 심의일자 : 2013. 12. 18.(수)

의안번호	요청사항	사업명	사업개요	발주청
2013-13-01	실시설계 (적정성)	이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위치 : 합천군 쌍책면 건태리 일원 · 사업내용 : 하천정비 L=2.33km, · 사업비 : 169억원(공사비134, 보상비등35) · 사업기간 : 2013 ~ 2015년	합천군 (건설방제과)

의안번호	안건명	발주청
2013-13-02	금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하동군
2013-13-03	통영시 체육시설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통영시
2013-13-04	당항포관광지 수변공원조성 및 중심지역 편의시설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성군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팀담당
(055)211-4625

계약심사 현황

(단위:백만원)

기 간	분 야		건수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2013년 11월	계		63	93,372	86,523	6,849	7.33%
	공사	토목	26	58,802	54,139	4,663	7.93%
		건축	7	5,984	5,638	346	5.78%
		기타	9	10,331	9,555	776	7.51%
	용역		14	17,761	16,733	1,028	5.79%
	물품		7	494	458	36	7.19%

■ 자료 : 도 회계과 계약심사담당 (055)211-3548

기술인 나눔 정보

2014년 국가기술자자격 검정시행일정

회 별	회 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 표	·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방 문 제 출)	실기(면 접) 시 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 (인 터 넷))		
기술사	제102회	1.3~1.9	2.9	3.21	3.24~3.27	4.19~4.30	5.23
	제103회	4.4~4.10	5.11	6.27	6.30~7.3	7.26~8.8	8.22
	제104회	6.27~7.3	8.3	9.19	9.22~9.25	10.18~10.30	11.14
기사 (산업기사)	제1회	2.7~2.13	3.2	3.14	3.17~3.21 (3.18 제외)	4.19~5.2	5.30
	제2회	4.18~4.24	5.25	6.5	6.9~6.12	7.5~7.18	8.22
	제3회	7.25~7.31	8.17	8.29	9.1~9.4	10.4~10.17	11.14
	제4회	8.22~8.28	9.20	10.2	10.6~10.10 (10.9 제외)	11.1~11.14	12.12

■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관련 사이트 정보

1. 국토교통전자정보관(<http://www.codil.or.kr>)
2.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http://www.eais.go.kr>)
3. 건설인허가시스템(<http://cpermit.go.kr>)
4. 건설CALS포탈시스템(<http://calspia.go.kr>)
5. 건설공사정보시스템(<http://cws.kiscon.net>)
6. 토석정보공유시스템(<http://tocycle.com>)
7. 건설업체정보조회(<http://kiscon.net>)
8. 건설공사위치확인(<http://kiscon.net/map/>)
9. 건설공사부실벌점조회(http://kiscon.net/pis/ksc_index.asp)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snd.net>(실국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i.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재 신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4623~6

FAX : (055)211-4619

e-mail : babyhye@ka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